

## 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## #.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가 등록 외 장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

질 의 요 지	회 신 내 용
('13. 1. 18, 울산지방청)	('13. 1. 24, 항만운영과-381)
○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)의 등록을 한 자 가 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	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제26조의3제1항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·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- 따라서, 항만용역업(통선업)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등록 장비 외의 장비(통선)로 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「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」제13조에 따라 등록사항변경조치 후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임
○ 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록장비 외의 장비에 대 하여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이 적용되는지	○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장 비라 하더라도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
○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「항만운송 사업법 시행령」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 도 하지 않은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 행하였을 경우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33조의 "등록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"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	○ 항만용역업(통선업)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, 등록사항 변경조치 없이 등 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선령 30년 이상 선박 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법 제31조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제26조의3 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위반한 것임 - 따라서, 동 사안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33조 (양벌규정)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개



## 항만시설사용 및 항만운송(관련)사업 업무편람

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
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
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
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됨